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2014. 9. 17. 제정

2015. 4. 1. 일부개정

<정책기획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조직 및 기능) ① 추천위원회는 고려대학교 대학평의회(이하 '대학평의회'라 한다)에 두며, 비상설 기구로 운영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법인에 개방이사 및 추천감사(이하 '개방임원'이라 한다) 선임 대상자를 추천한다.

제 3 조 (구성, 임기) ① 추천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추천기관과 인원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2.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고려사이버대학교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중앙고등학교 및 중앙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5.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및 부속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② 대학평의회 의장은 법인의 개방임원 선임 대상자 추천 요청이 있으면 즉시 제1항 각 호의 기관별로 위원을 추천받아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 전에 추천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제1항의 해당 기관에 새로운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고, 해당 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한다.

제 4 조 (임기)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되며 개방임원 선임이 확정되는 날로 종료된다.

제 5 조 (위원장 등)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추천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6 조 (개방임원의 추천) ① 법인은 개방임원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 개방임원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임원 선임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추천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방이사의 경우 대상인원의 2배수, 추천감사의 경우 단수로 선정하여 법인에 추천한다.

제 7 조 (개방임원의 자격) ① 개방임원은 법인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임원으로 추천될 수 없다.

1. 법령 또는 법인정관 등에 의하여 법인 이사 또는 감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
2. 추천일 현재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개방임원으로 추천되어 재직 중인 사람은 예외로 한다.
3. 추천일 현재 법인에 재직 중인 이사 또는 감사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제 8 조(회의의 소집) ① 법인의 요청이 있거나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 통지는 이메일 등의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제 9 조(정족수)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 조(회의록) 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보관한다.

제 11 조(비밀유지) 추천위원회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및 동 시행령,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 「고려대학교 학칙」 및 그 밖의 고려대학교 학교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8조 제1항, 제10조 개정)